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17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자 : 박석 의원(찬성의원 45명)
- 나. 제 안 일 : 2023년 5월 30일
- 다. 회 부 일 : 2023년 6월 5일
- 라. 상 정 일 :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2023년 7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2022년 10월 제정·시행되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시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단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본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간 상충성을 해소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에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가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.

나. 입법예고 (2023. 6. 8. ~ 6. 12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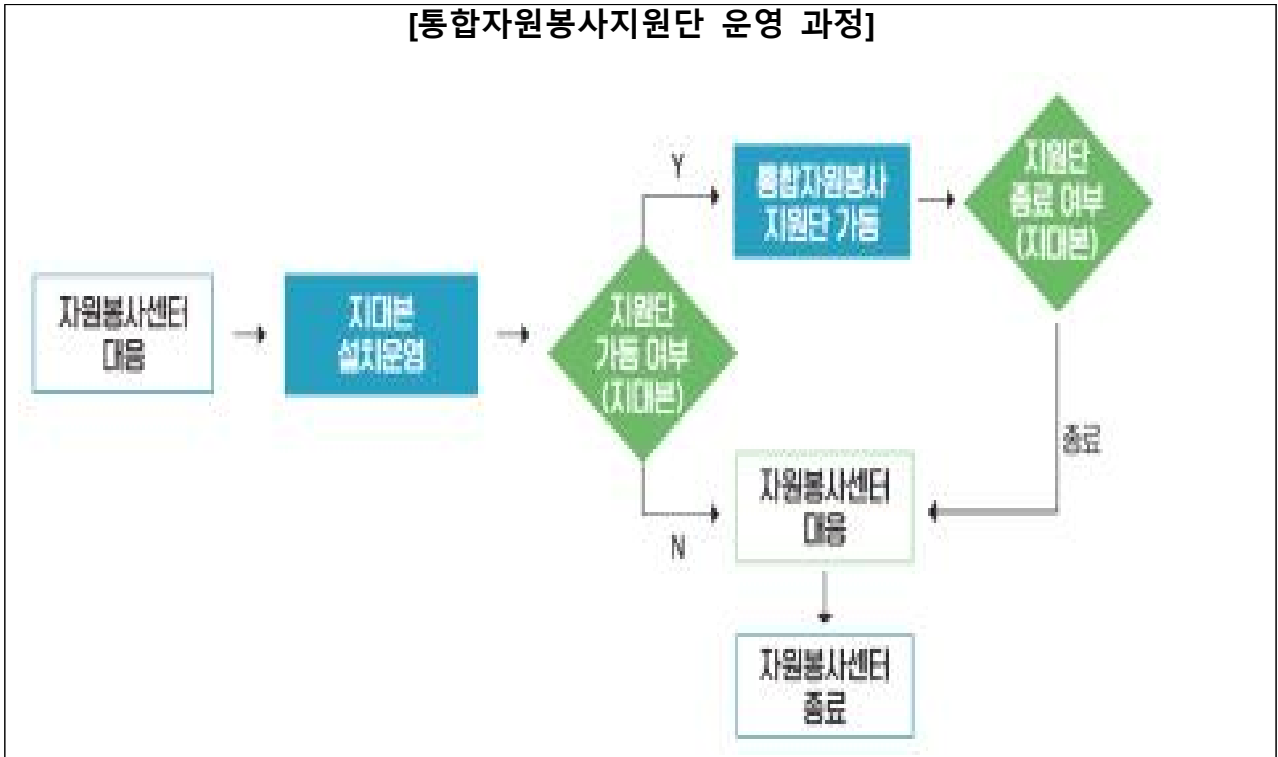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사업수행 항목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(안제4조제2항제5호)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설립 및 사업 등) ① (생략)</p> <p>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5. ~ 9. (생략)</p>	<p>제4조(설립 및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</p> <p>6. ~ 10. (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</p>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사항을 명확히하여 관련 조례간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, 상충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행정안전부(재난자원관리과)의 「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계획」 및 「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(안)」 통보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요청(2020.3.12.) 하였으며,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(2021.10.1.,2022.4.14.)하여 서울시는 2022년 10월 17일 제정·시행중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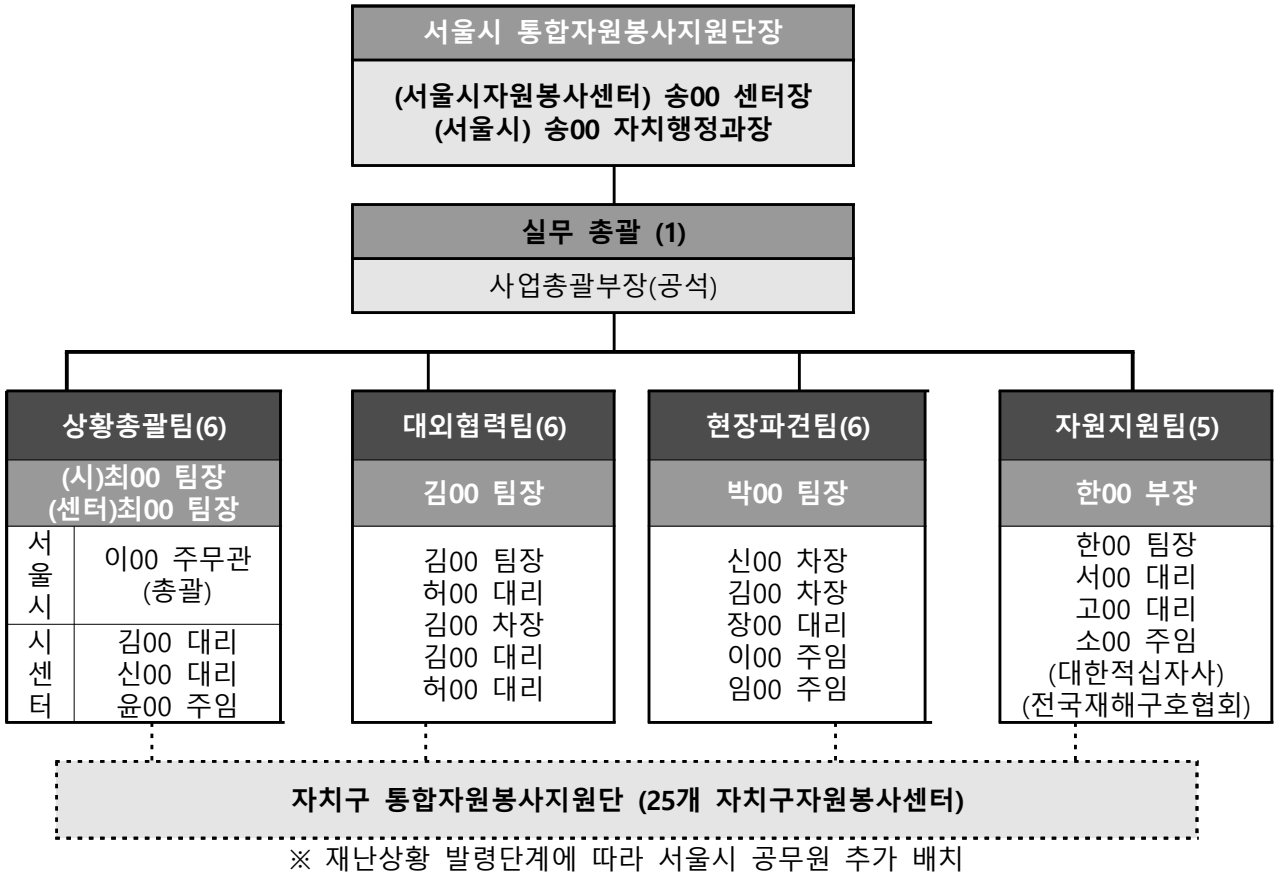
[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과정]



※ 행정국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조항 신설('19.12월) 및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('22.10월)에 따른 것으로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.
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·시행(2022.10.17.)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,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사항을,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중에 있었는데, 관련 규정을 적기에 개정하여 사업평가, 예산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짐.
- 한편, 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서울시(자치행정과)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공동단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단순히 행정국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[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도(2023.6.1. 기준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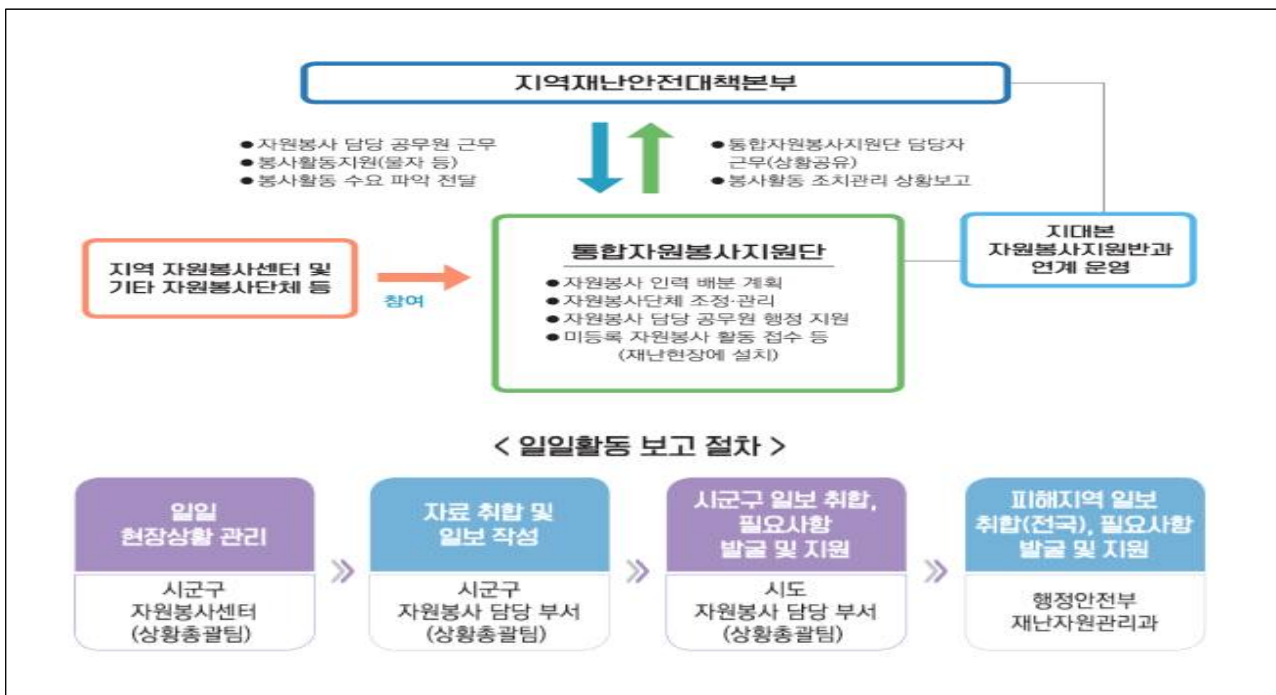


< 공동단장일 경우 역할 분담 >

구분	공무원 단장	민간인 단장
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원봉사 부서의 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되 필요시 타기관·타단체장으로 조정 가능
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계기관 협조(재난부서, 시도 및 중앙에 지원 요청 등)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 파악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·지원 지대본회의에 참여하여 재난상황 정보를 공유 행·재정적 지원, 재난부서 협력, 재난관리 기금, 재해구호기금 활용방안 마련 일일활동사항 보고 - (시군구⇒시도⇒행안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상시 상시적 재난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시 자원봉사단체 간 역할조정 자원봉사 모집·교육·배치와 활동조정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팀 편성 자원봉사 필요인원, 활동분야, 필요 물품 등 산출 일일활동상황 취합 및 정보제공 등

- 또한, 행정국은 ‘서울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’구성에 따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체계 구축과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
 - 재난 대응 지원 현황 관리 및 점검과 함께 연합모의 훈련 등을 통한 상황발생과 전파, 모집, 집결, 배치 등 기관별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도 요구된다고 하겠음.

〈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체계〉

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6. 토론요지 : 없음.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전원 찬성).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설립 및 사업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~ 9. (생략)</p>	<p>제4조(설립 및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</p> <p>6. ~ 10. (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</p>